

의안번호	제 17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1월 4일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175
----------	-----

제출연월일 : 2023년 1월 4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1. 제안사유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신속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도세를 감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사망자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건축물 등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차량 등 재산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3. 의안전문 : 붙임

## 4.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충청북도 도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1. 감면대상자 :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2. 세목별 감면내역

### 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 나. 취득세

-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상기 감면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관계 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2015.12.29.>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2021. 1. 5.>
-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 □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1.3.29.>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9. 12. 31.>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초과 1,300만원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초과 2,600만원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초과 3,900만원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초과 6,400만원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10
6,400만원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 <2019. 12. 31.>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

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9. 12. 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 3. 29., 2019. 12. 31.>